



#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의 쟁점 및 영향

황현아 연구위원

-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공개변론을 열고,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여부를 심리하였음
  - 가동연한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의 만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실이익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며,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그에 따라 일실이익 인정 규모도 커지게 됨
  - 기존에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경험직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번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가동연한을 상향할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음
  
- 가동연한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나, 구체적·개별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적용되고, 다른 직종의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에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참고함
  -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경우, 해당 직종이나 직업에 정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 및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가동연한을 결정함
  - 반면,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와 같이 장래 피해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적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함
  - 한편, 다른 직종의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에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있음
  
-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1989년 대법원 판결로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변경되어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그 간의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하면 가동연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대수명(남자 67.5세, 여자 75.3세), 연금수급연령(60세) 등을 고려할 때 가동연한을 만 55세까지로 보는 기존 판례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폐기한다고 판단하였음
  - 위 판결 선고 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기대수명은 당시 보다 10세 이상 증가하였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도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며, 고령자가 생계 및 노후 대비를 위해 소득활동을 계속할 필요성도 커짐
  -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실제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정신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및 정년 연장 압박,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조정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가동연한 상향에 수반되는 보험료 조정,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1. 배경



-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변경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음<sup>1)</sup>
  - 기존에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왔으나,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
  -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음
- 본고에서는 가동연한에 관한 기존 판례의 내용과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이 필요한지 여부 및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해보고자 함
  - 가동연한 상향 시 현재 일반적으로 만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청년 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액 중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번 대법원 사건에서 가동연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증가에 따른 보험료 조정 압력이 문제될 수 있음

## 2. 가동연한의 의의 및 기능



- 가동기간 및 가동연한은 손해배상 시 일실이익 산정을 위해 활용되는 개념으로, '가동기간'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을 의미하고, '가동연한'은 가동기간의 종료시점을 의미함
  - '일실이익'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의미하며, 소극적 손해<sup>2)</sup>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임
  - '가동기간'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날부터 시작되며, 남자의 경우 사고 전 이미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

1)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판단함.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 통상임금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변론 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성됨. 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 지출을 의미하며,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이 이에 해당함.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으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을 의미하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이에 해당함(사법연수원(2008), 『손해배상소송』, p. 108 참조)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됨

- ‘가동연한’은 가동기간의 종료시점으로, 사고가 없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하였더라면 소득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최종 시점을 의미함

■ 가동연한이 상향 조정되면 가동기간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일실회의 규모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가동연한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되면, 상향된 만큼 가동기간이 연장되고, 그에 따라 일실회에 해당하는 손해(사망 및 후유장애에 따른 상실수익액, 부상 시 휴업손해 등)의 규모가 늘어나게 됨

〈표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가동연한 상향에 따른 일실회의 증가 예시

구분	피해자	현행(만 60세)	변경(만 65세)	증감
사망 상실수익액	만 35세 일용근로자	2억7,700만 원	3억200만 원	2,500만 원
부상 휴업손해	만 62세 일용근로자	0원	1,450만 원	1,450만 원

자료: 대법원 공개변론 손해보험협회 발표자료

### 3. 가동연한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 법원은 가동연한 결정과 관련하여 (i)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동연한을 결정하는 방법과 (ii)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적용하는 방법을 모두 채택하고 있음

-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정년이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경우 해당 직장의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특수 직종에 대해서는 그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등,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동연한을 결정하고 있음
  - 판례가 인정한 직종별 가동연한은 〈표 2〉와 같음
- 한편, 대법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대법원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경우 만 60세, 의사의 경우 만 65세를 경험칙에 의한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있음
  - 경험칙에 의한 가동연한은 개별적·구체적 가동연한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표 2〉 대법원 판례상 직종별 가동연한(1990년대 이후)

가동연한	직종	사건번호	가동연한	직종	사건번호
35세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sup>1)</sup>	91다9596	60세가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자	91다35243
40세가 될 때까지	프로야구선수	91다7385	63세가 끝날 때까지	농업 노동 종사자 <sup>3)</sup>	92다18573
57세가 될 때까지	보육교사 <sup>2)</sup>	2000다59920	65세가 될 때까지	수산물중매인 <sup>4)</sup>	92다38034
60세가 될 때까지	민요풍 가요 가수	91다3888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	92다24431
	피복 판매상	91다14499		소설가	92다43722
	의복 제조·임가공업자	91다19494		의사 <sup>5)</sup>	93다3158
	활어 구매·운송업자	93다6546	한의사	96다54560	
	식품소매업자	93다12749	70세가 될 때까지	법무사	92다7269
	보험모집인	94다28536		변호사	92다37642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95다24364		목사 <sup>6)</sup>	96다426
송전전공	99다6302	승려 <sup>7)</sup>		2004나42496	

주: 표 기재 나이는 모두 만 나이임

- 1)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가동연한이 종료한 이후에는 도시 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을 적용
- 2)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 3) 농업 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만 63~65세 사이에서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고 있음
- 4)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 5)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한 판례도 있음(87다카376)
- 6) 목사의 정년이 경험칙상 70세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음(98다39114)
- 7) 서울고등법원 사건

자료: 사법연수원(2008), 『손해배상소송』, p. 192~195(해당 자료에 언급된 판례 중 1990년 이후에 선고된 판례를 발췌, 정리함)

■ 대법원은 1980년대까지 경험칙에 의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았으나,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였으며, 그 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연장하였음

- 1980년대까지 대법원은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55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sup>3)</sup>
  - 경험칙에 의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뿐 아니라 직종별 가동연한 판단 시에도 육체노동 관련 직종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로, 사무직 종사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음<sup>4)</sup>
- 1989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 발전에 따른 사정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만 55세를 가동연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종전의 판례들을 폐기하였고<sup>5)</sup>,

3) 대법원 1956. 1. 26. 선고 4288민상352 판결, 대법원 1966. 10. 11. 선고 66다1399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91다9 판결 등

4)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사건들을 보면, 채탄광부(70다269), 사진사(75다2278), 설계사무소 건축 보조사(80다54), 미용사(81다35), 중기 정비업자(82다카1297), 제과점 기술자 겸 경영자(86다카2804), 개인택시 운전자(87다카2663) 등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로, 개인회사 이사(76다156), 개인회사 전무(81다1151), 건설회사 기술사(80다754), 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무(81다115), 암자 경영자(80다2089), 행정서사(86다카112),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87다카69) 등 사무직 종사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사법연수원(2008), 『손해배상소송』, p. 192)

5)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이후 일용노동 종사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은 만 60세라고 판시하였음<sup>6)</sup>

-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일실이익을 산정해왔음

#### 4.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확대 관련 쟁점 및 논의사항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학생, 아동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다른 직종의 가동연한을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침
  - 사고 당시 피해자가 학생, 아동이어서 장차 성인이 되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육체노동자의 일용노임과 가동연한이 적용됨
    - 예를 들어 4세 남아가 수영장의 안전관리책임 소홀로 인해 익사한 사건<sup>7)</sup>에서,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동기간을 '사망한 남아가 살아있었다면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고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
  - 또한 일반 육체노동과 유사한 특수 직종의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에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참고가 될 수 있음
    - <표 2>에서 살펴본 직종별 가동연한 중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직종의 가동연한은 대부분 만 60세가 될 때까지인데, 이는 대법원이 경험칙상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판단한 이후에 형성된 판례의 경향임
    -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만 55세를 가동연한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음<sup>8)</sup>
  - 따라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상향할 경우 전반적인 가동연한을 상향 및 이로 인한 일실이익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 대상 사건 두 건 중, 한 건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았고(서울고법 사건), 다른 한 건은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았음(광주고법 사건)<sup>9)</sup>
  - 서울고법 사건의 경우, 수영장 익사 사고로 사망한 만 4세 5개월 남아에 대해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

6)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7) 대법원 2018다248909사건(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이하, '서울고법 사건')

8) 각주 4) 참조

9) 대법원 2018다271855 사건 (원심: 광주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15118 판결, 이하, '광주고법 사건')

및 가동연한(만 60세가 될 때까지)을 적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

- 광주고법 사건의 경우, 난간 파손으로 인하여 추락사한 만 49세 11월 남성에 대해, 사망 당시 종사하던 직업<sup>10)</sup>의 실제 소득 및 가동연한(만 65세가 될 때까지)을 적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
  - 광주고법 사건은 피해자가 사고 발생 전 수행하던 조명 제품 판매업 및 전기공사 견적·점검업무의 성격, 피해자의 자격증 취득 및 실제 업무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 업무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도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경험직상 만 65세의 가동연한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sup>11)</sup>
-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지 않은 광주고법 사건이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존에 학계에서는 가동연한 상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손해배상 실무를 고려할 때 가동연한을 상향할 경우 과대배상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정년 및 가동연한을 통상 만 65~67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년 및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함<sup>12)</sup>
- 손해배상 관련 제도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비교우위를 두어야 한다는 측면과, 의학적 발달로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른 생활비 지출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가동연한을 만 63세 내지 만 65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됨<sup>13)</sup>
- 급속한 고령화 현상 및 노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육체노동자의 경우 만 60세, 정신노동자의 경우 만 65세로 인정되고 있는 가동연한의 관행적 기준을 각각 만 70세 및 만 80세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sup>14)</sup>
- 반면, 가동개시연령(20세), 가동일 수(도시: 22일, 농촌: 25일)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변경하지 않고 가동연한만 연장할 경우 실제 손해보다 과대배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음<sup>15)</sup>

10) 피해자는 직원 1명을 둔 소규모 조명업체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직접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전기공사 견적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11) 광주고법 사건에서 원심은, “전기공사업 및 조명제품 판매업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인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근거로, (i) 사망 당시 피해자가 만 49세의 남성으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3세이며, 2016년 5월 경 전체 취업자 26,613,000명 중 55~64세 취업자의 수가 4,708,000명으로 약 17.69%에 이르고, 사고 후인 2017년 5월 경 해당 연령 취업자는 5,029,000명으로 증가한 점, (ii) 사고 이후 2017년 5월 경 피해자의 직종이 속한 건설업 종사자 약 203만 명 중 만 55~64세 종사자는 약 54만 9,000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고, 서비스·판매 종사자 약 603만 3,000명 중 만 55~64세 종사자는 약 120만 2,000명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업종 종사자들의 정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해자가 사고 전 실제 행하던 업무 중 전기공사 견적 및 점검업무의 경우 그 업무의 내용, 전기공사 자격증 취득 및 실제 업무 종사 기간을 고려할 때 만 65세까지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판매업무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보다 더 단순하고 난이도가 낮아 만 60세 이상의 사람도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12) 최보국(2017), 「손해배상 시 고령자의 가동연령 연구」, 『손해사정연구』, 제9권, 제1호, p. 22~24, p. 34~35

13) 박영민(2011),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 『한양법학』, 제22권 제3집, p. 55

14) 윤석찬(2009. 7), 「신체침해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법조』, p. 127

15) 법률신문(2018. 11. 22), “[지상토론] 노동가동연령 65세 상향” 중 경수근 변호사 작성 부분 참조. 다만 이러한 반대의견

-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7개의 관련 단체<sup>16)</sup>가 가동연한 상향 조정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대부분 가동연한 상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다만 가동연한 상향 시 보험료 증가로 인한 부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됨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경제학회, 근로복지공단은 가동연한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한편,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은 가동연한 상향 시 보험료 증가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표 3〉 가동연한 상향 관련 대법원에 제출된 각계 의견

의견 제출 기관	의견 내용
통계청	가동연한 변경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평균수명,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보험통계, 가계동향조사 등 자료만 제출함)
대한변호사협회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판결이 나온 이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평균 수명이거나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연령 분포 추이 등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b>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b> <sup>17)</sup>
한국법경제학회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고령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연금개시연령의 상향, 정년 연장 등을 고려할 때, <b>가동연한 상향 조정은 필요함</b> . 건강수명과 고령노동자 고용 증가 효과는 연령별로 차별적이므로, <b>몇 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함</b> <sup>18)</sup>
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청구 시 노령기 경제적 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실질적인 소득 상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산재 요양 승인된 근로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급격히 확대된 점 등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b>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b> . 가동연한 상향 시 공단에서 가해자로부터 추가 회수 가능한 구상금 규모는 연간 약 240억 원으로 추정됨
손해보험협회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b>최소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b> (휴업손해 영향 추가 고려 시 인상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하는 등 <b>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b> 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평균수명 연장 및 고령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가동연한을 상향할 경우, 가동일 수도 사회·경제적 여건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 있음. 가동일 수는 2017년 기준 건설업 17.6일, 제조업 20.7일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sup>19)</sup>
금융감독원	가동연령 상향은 고령 근로자 증가 등 사회적 추세에 맞게 피해자의 소득 인정 기간을 폭넓게 인정하여 <b>피해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과 보험료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b> 이 모두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대법원 보도자료(2018. 11. 29), “손해배상 가동연한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공개변론영상<sup>20)</sup> 및 각주 기재 자료 등 참조

은 가동연한 상향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라기보다는 가동개시연령, 도시 및 농촌 일용노임, 가동일 수 등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동연한만 연장할 경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16) 7개 단체 중 공무원연금공단은 특별한 의견이나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실제 회신을 한 기관은 6개임  
 17)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서 전문: <https://www.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9016>  
 18) 관련 내용은 법률신문(2018. 11. 22), “[지상토론] 노동가동연령 65세 상향” 중 홍정민 변호사(한국법경제학회 기획이사, 경제학 박사) 작성 부분 참조  
 19) 공개변론 시 제출된 손해보험협회 발표자료: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600&gubun=6&searchOption=&searchWord=>  
 20) <https://www.youtube.com/watch?v=xdWCa1sXeXA>(재생시간 1시간 30분 경 부터)

## 5. 가동연한 상향 필요성



- 대법원 공개변론에 제출된 각계 의견 및 이에 관한 학계 의견을 종합해보면, 가동연한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한 5개<sup>21)</sup> 기관 중 3개 기관은 명시적으로 가동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유보적 의견을 제출한 2개 기관도 보험료 인상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취지였으며 가동연한 연장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아니었음
  -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1950/1960년대와 1989년의 평균수명 및 정년 변화, 노령연금 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르면 1989년과 2018년 사이에도 가동연한을 상향할 만한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1989년 기대수명은 남자 67.5세 여자 75.3세인 반면 2016년 기대수명은 남자 79.3세, 여자 85.4세로 10년 이상 증가하였음
    -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58세에서 60세로 2년 증가하였음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도 1989년과 동일하게 60세로 되어 있으나, 연금 수령을 65세 이상으로 연기할 경우 연금액을 가산하는 제도 및 60세 이후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60~65세의 기간동안의 소득활동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1969년생부터는 연금개시연령 자체가 65세로 변경될 예정임
    - 1950/1960년대, 1980년대 및 현재의 기대수명 및 정년 변화 등에 대해서는 <표 4>를 참조함
- 1989년 이후 지난 30년간 경제적·사회적 변화 및 만 60세 이상임에도 생계 활동을 지속할 것이 요구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동연한의 상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경제 상황 및 각종 제도 변화로 인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본인의 생계 및 노후 대비, 가족 부양 등을 위해 소득활동을 지속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고, 건강 증진 및 노동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고령자의 노동 가능성이 제고된 측면도 있으므로, 가동연한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광주고법 사건과 같이 자신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별도의 정년이 없고 기술 및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65세까지 소득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임

21) 7개 단체 중 통계청, 공무원연금공단 제외

〈표 4〉 1950/1960년대, 1980년대 및 2010년대의 기대수명 등의 변화

항목	1950/1960년대	1980년대	2010년대
기대수명	(1950)남자 51.12세, 여자 53.73세 (1960)남자 54.92세, 여자 60.99세	(1981)남자 63세, 여자 69세 (1989)남자 67.5세, 여자 75.3세	(2016)남자 79.3세, 여자 85.4세
정년 <sup>1)</sup>	55세	58세	60세
노령연금	해당 없음	· 연금수급연령 <sup>2)</sup> - 일반노령연금: 60세 - 특수직종사자: 55세 - 조기노령연금: 55세	· 연금수급연령 <sup>3)</sup> - (좌동) · 연기연금제도/소득활동 시 감액제 <sup>4)</sup> - 60세 이상~65세 미만 · 수급연령 상향 예정 <sup>5)</sup> - 일반노령연금: 65세 - 조기노령연금: 60세
고령 <sup>6)</sup> 생산 가능인구 비중	해당 없음	(1989) 9.3%	(2018. 9) 21.1%

주: 1)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기준

2) 舊국민연금법(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56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3) 현행 국민연금법 제62조

4) 연기연금제도(국민연금법 제63조): 수급 시점을 65세 이후로 연기할 경우 연금액을 가산하는 제도  
소득활동 시 감액제도(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수급대상자가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

5) 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

6) 고령자 기준: 55~64세

자료: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76 판결; 법률신문(2018. 11. 22), “[지상토론] 노동가동연령 65세 상향”; 국민연금법 등 참조

## 6. 가동연한 상향의 영향



■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현재 60세인 정년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청년 취업 문제 악화 및 세대 간 갈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임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경우 육체노동자는 만 65세까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
- 이러한 판결이 선고될 경우, 사무직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70세까지로 상향해야 한다거나, 현재 통상 만 60세인 사무직 종사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등 사회적 압박이 커지게 될 것임
  - 이는 일자리 문제와 결부되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려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동연한을 상향하지 않더라도 가동연한 상향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편, 가동연한 사항은 보험약관 개정과 보험료 조정 등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은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정하여 상실수익액 및 휴업손해 등을 산출하고 있어,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약관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1989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인배상 및 무보험차 상해 지급 기준의 사망 및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산출 시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 월수를 산정하고 있고<sup>22)</sup>,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산출 시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업 일수를 산정하지 않고 있음<sup>23)</sup>
  -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만 65세로 상향될 경우 위 약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 또한,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상실수익액 및 휴업손해 관련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어나게 되어 보험료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될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가동연한 상향 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중 사망으로 인한 상실수익액 및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지출 규모는 연간 1,2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sup>24)25)</sup>
  - 자동차보험 외에도 화재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 다양한 배상책임 관련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액 및 보험료 조정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kiri**

2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라. 취업가능 월수 및 다. 후유장애, 2. 상실수익액 참조)

23) 위 기준(나. 부상, 3. 휴업손해 부분 참조)

24) 공개변론 시 제출된 손해보험협회 발표자료: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600&gubun=6&searchOption=&searchWord=>

25) 참고로, 가동연한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변경된 1990년대 초반에도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 자체가 대폭 확대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동연한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대인배상의 보상 한도는 1990년대에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였음. 사망에 대한 보상 한도의 경우, 1992년 1천500만 원, 1998년 6천만 원, 1999년 8천만 원, 2004년 1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그 후 2014년에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1992년 이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개정 내역 참조)). 현재는 90년대와 달리 대인배상 범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고,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보험료를 조정할 경우 충분한 근거자료를 통한 설득 및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